

여주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임용시험 시행 변경계획 공고

여주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임용시험 시행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

여주시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 요 업 무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 서기관(4급)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주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

임용 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보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보임용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할 수 있음. ※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보임용 가능 •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의 직근하위 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사람은 승진할 수 있음.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직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해당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요건 또는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상위직급의 공무원 포함)이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도달하는 경우 • 국화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4

응시 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격 및 경력요건

아래와 같이 필수요건 각 호 중 하나를 갖추고, 자격요건(관련학과 학력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기준 구분		입 용 사 유	
필수요건		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u>의사면허</u> 소지자 ②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u>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u> , 「간호사법」 제12조에 따른 <u>간호사</u> ,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약사</u> ③ <u>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u>	
자격 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근무 및 연구경력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13.(월) ~ 2026. 4. 17.(금) 18:00 까지 / 5일간
 - ※ 시험공고 기간 : 2026. 3. 31.(화) ~ 2026. 4. 10.(금) /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 : 여주시청 3층(본관)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여주시청(민원토지과)에서 여주시 수입증지 수수료(1만원)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등기우편 접수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 우)12619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 동봉
 -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여주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7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일 시	장 소	
2026. 4. 30.(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 게시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8

보수 수준

구 분	보수 지급 기준								
경력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130% 범위내 연봉액 책정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임용예정 직위</th> <th>연봉등급</th> <th>연봉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소장</td> <td>개방형4호(4급 상당)</td> <td>70,490천원</td> <td>하한액 기준</td> </tr> </tbody> </table>	임용예정 직위	연봉등급	연봉액	비고	보건소장	개방형4호(4급 상당)	70,490천원	하한액 기준
	임용예정 직위	연봉등급	연봉액	비고					
보건소장	개방형4호(4급 상당)	70,490천원	하한액 기준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수수료 : 1만원 - (방문접수) 여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여주시청 민원토지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 없을시 기재 금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 만 인정 ※ 경력 전일제 또는 시간제 반드시 표기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3장 이내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장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 사항만 작성 (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본인이 해당하는 응시자격기준에 '○' 표기	필수
7.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7-1,2,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부	○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 ○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최종학력졸업(재학)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 (면허)증 사본 각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면허)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필수
11.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12.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전일 또는 시간제 여부 기재하되, 시간제는 1일 또는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담당업무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 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필수
1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 인정]	해당 자만 제출
※ 주의사항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 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등이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시험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한 후 시험을 진행하며, 당초 응시자는 별도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고,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총무과(인사팀) 채용담당자(☎031-887-211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경기도 여주시청	여주시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4. 주요업무내용		비 중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10
2.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10
3.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4. 주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1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0
6.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난임의 예방 및 관리		10
7.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10
8.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0
9.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10.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5
11.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5. 관련분야		
○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보건소와 관련되는 업무		
6. 필요지식 및 기술		
1.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보건행정 전문가		
2.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② 필수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 지역보건의법 제15조 ③ 기타 필수요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나. 경력 요건 (하나 이상 충족)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공무원</td> <td>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r> <td>민간인</td> <td>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d> </tr> </table>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 분야	○ 의무약무보건의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라. 특별 요건	① 자격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② 외국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③ 정보화능력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④ 기타 특별요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2. 능력 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i)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i)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 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노력 ii) 업무개선 능력 iii) 자원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